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황현아 연구위원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8년 9월 14일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대한 영향력 제한, (ii)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 강화, (iii)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투명성 강화 및 (iv)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등임. 쟁점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외부 평가 의무화’, ‘고액 연봉 직원 보수 공시’ 등은 최종 발의된 법안에서 제외되었음. 개정안은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 되었던 개선 방안은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포함), ② CEO 선임 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포함), ③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④ 감사 업무 실효성 제고, ⑤ 감사위원 선임 요건 개선, 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⑦ 임직원 보수 공시 강화 및 내실화(고액 연봉 임직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포함) 및 ⑧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¹⁾
- 입법예고 된 개정사항 중 (i)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²⁾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³⁾로 확대하는 방안, (ii)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iii) 임원이 아닌 직원의 연봉액을 공시하는 방안, (iv)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방안 및 (v)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⁴⁾

1) 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2018. 3. 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최다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 p. 2)

3)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 p. 2)

4) 연합뉴스(2018. 5. 7), “은행聯,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일부조항 반대”; 머니투데이(2018. 4. 3), “정부 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대폭 늘려야 할 판... 고민 빠진 금융권”; 서울경제(2018. 5. 13), ““급여 갖고 여론재판 하나”... 금융권, 고액 성

- 반면, 참여연대에서는 이사에 대한 통제가 미비한 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 대주주 지위 취득 시와 유지 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⁵⁾
- 2018년 9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제도 의무화, 고액 연봉자 개별 보수공시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및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6월 22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였음⁶⁾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며,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외부평가의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사항 이외에도, 규제의 실효성은 약한 반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되었음
 - 임원이 아닌 직원 중 고액연봉자의 보수액을 개별 공시하는 방안⁷⁾,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안(3월) 및 정부발의안(9월) 비교

구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입법예고안	정부발의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개편: -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 - 법인주주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 신설 -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 명확화	32조	○	삭제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추가		○	○
	3) 주식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CEO선임 투명성 및	1) CEO 자격기준 내실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¹⁾ 을 법상 의무화	5조	○	○

과급 공시에 반기“ 등

- 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2018. 4.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6)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2018. 6. 22), “제41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 7) 참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공시 규정이 적용되어,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개인별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포함되는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게 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2)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이사 후보 추천 시 집합적 정합성 평가	12조	○ ¹⁾	○ ²⁾
	3)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현행) '의결권의 0.1% 이상' → (개정) '의결권의 0.1% 이상 또는 직전 분기 말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 ³⁾	33조	○	○
	4)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6조	○	삭제
	-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12조	○	○
임추위 독립성 강화	1)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 대표이사 참여 금지	17조	○	○
	2) 임추위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
	3) 본인 추천 결의에 해당 위원 참석 금지		△ ⁴⁾	○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1)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보장 선언 규정	20조	○	○
	2)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에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대우		○	○
감사위원 선임요건 개선	1)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 재임기간 제한 - 사외이사 관련 규정 준용 - 동일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19조	○	○
	2)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직무전문성'요건 준용		○	○
	3) 감사위원 임기 2년 보장		○	○
	4)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		○ (보수위 겸임가능)	○ (임추위/보수위 겸임가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24조 27조	○	○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1) 고액연봉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 -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성과보수 2억 원 이상	22조	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	적용대상: '임원'⁵⁾
	2)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총 심의 - 대형상장금융회사 ⁶⁾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		'심의' 사항	'설명' 사항
	3)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수 독립성 의무화 -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 체계 마련 의무화(현행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체계와 동일)		○	○

주: 1)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문성 등

2) 금융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정합성 명시

3) 후단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한함

4) 입법예고안에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였으나, 정부발의안에서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였음

5) 다만, 정부발의안 제22조 제5항 제4호는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함으로써,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원이 아닌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음

6)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

자료: 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2018. 3. 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9.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부발의안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등 규제의 강도는 높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방안들이 최종 안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금융업계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 일부 방안을 철회하였음
 - 효과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규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규제 공백을 보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종안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이 제외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한 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은 기존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소수주주권 행사 확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각종 절차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위와 같은 규제들은 CEO에 대한 사외이사 및 소수주주 등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되는 것임
 - 그러나 지배구조법상 감시 외에도, 외부감사 강화, 스톱워드십 코드 도입 등 기업에 대한 감시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 기구의 비대화 및 감시 절차의 복잡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도입으로 내부통제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CEO 등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내부통제를 매개로 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 CEO 등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관련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 점검, 위반 시 징계조치 등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개정안 제24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5조 및 별표),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회사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내부통제 관련 문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⁸⁾과도 관련되는데, 향후 국회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규제 수준 및 적정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Kiri**

8)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2018. 10. 17),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승현(2018. 10. 29),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KiRi 리포트』 참고